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

■ 황정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54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총괄 검토	2
2. 개별 법률 검토	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황정아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9. 6.

다. 회부연월일 : 2024. 9.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업무 행위자의 결격사유로 하는 것은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공적 영역의 업무, 거래상의 신뢰나 재산상의 신용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는 이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임.
-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삼는 것은 당사자의 영업활동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에 대한 과잉규제가 될 수 있고, 당사자에 대해서는 재기의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음.
-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관한 규정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해당 임용, 자격 또는 인허가가 가지는 공공성, 신뢰성이 높거나 거래상의 신뢰나 재산상의 신용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아울러 「행정기본법」 제16조제2항에서는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①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②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③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④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¹⁾.

1) 「행정기본법」

제16조(결격사유)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

-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²⁾,
- 취업에 요구되는 자격 등의 공공성, 신뢰성이 높거나 거래상의 신뢰나 재산상의 신용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만을 이유로 곧바로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에 특정직역이나 자격·허가 등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한 것이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해당 법률들에 규정된 결격사유를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를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9개 개별법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등록, 신고 수리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래 개별 법률 검토 사항에서 볼 수 있듯이 주무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2. 개별 법률 검토

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안 제1조)

- 제정안은 광고판매대행사업의 대표자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1. (생략) 2. <u>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3. ~ 6. (생략) ③ (생략)	제12조(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3.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상 ‘광고판매대행사업’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방송광고의 판매를 위탁받아 광고주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통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의 구현을 위해 동법에서 방송광고판매를 방송사업과 분리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대표자는 방송광고판매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로서,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가 되면 배임·횡령 등 사적이익 편취로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질서 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행 대표자 결격사유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나. 「방송법」에 대한 검토(안 제2조)

- 제정안은 「방송법」상 방송사업자 등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결격사유) ① (생략)	제13조(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다.	②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u>	<u><삭제></u>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8항·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u>	<u><삭제></u>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방송법」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제5항·제6항·제8항·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의 결격사유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는 내용임.

「방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중계유선방송”이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5. “중계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중계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음악유선방송”이라 함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배포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 “음악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음악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9조(허가·승인·등록 등) ①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때부터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텔레비전방송(이 호에서만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

2. 다음 각 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신고

가. 라디오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나. 데이터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다. 텔레비전방송 중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⑥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國內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3호다목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⑧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國內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의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제8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3호라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⑩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재정능력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3조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법인의 대표자가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⑪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외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원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승인·등록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와 같은 방송사업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와 관련해서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서비스 품질 유지 등 공익적 관점에서 최소한의 결격사유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방송사업 허가에서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은 중단 없는 방송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중요한 심사항목에 해당하고, 방송사업자 및 대표자 등의 경제적 결격사유로 인한 방송서비스 중단 발생 시 심각한 공공의 이익 침해가 우려됨.
- 방송사업자는 고도의 공정성, 공익성과 공적 책임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일반 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리능력이 요구되므로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가 될 경우 배임·횡령 등 사익의 유인이 존재함.
- 「방송법」 제13조의 결격사유는 공익성·공적책임이 중시되는 방송사업자 및 방송허가 등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한정되므로, 개인의 취업제한에 따른 불이익은 제한적인 측면이 있고, 결격사유에 대한 심도있는 검증을 통해 공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으로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및 공적 책임 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방송사 대표 및 편성책임자는 기업의 사용자 위치에 있는 자로서 일반 종사자와 구분되므로 제정안의 결격사유 완화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안 제3조)

- 제정안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위치정보사업자(개인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 및 위치정보 접근권한자의 결격사유 중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의 임원이 될 수	제6조(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① ----- ----- ----- ----- -----

현행	개정안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16조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 접근권한자(이하 이 조에서 “접근권한자”라 한다)로 지정될 수 없다.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u><삭 제></u>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제6조제1항에서 위치정보사업자(개인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 또는 위치정보 접근권한자의 결격사유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³⁾에서 그 등록요건으로 법인의 임원이 결

3) 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법인일 것
2.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출 것
3.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등록을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이는 위치정보의 중요성 및 위치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나 경제적 피해의 위험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위치정보사업자 업무의 높은 신뢰성과 공공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치정보사업자 임원 또는 위치정보 접근권한자의 결격사유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는 현행 규정의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 오·남용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더불어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를 관리하는 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 및 접근권한자는 고도의 전문성 및 도덕적 자질이 요구되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고,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치정보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요건 완화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대한 검토(안 제4조)

- 제정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상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IPTV사업자) 법인의 대표자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결격사유)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1. (생략) 2. <u>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u>	제7조(결격사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 현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4)에 따르면, 인터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등)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자는 법인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허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명,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콘텐츠 수급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3. 재정 및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 시설계획서(주요 시설의 임차 시는 임차계획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3.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능력
6.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이 확실한지 여부
7. 시설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8.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 삭제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허가를 할 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절차, 심사기준에 대한 배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같은 법 제7조제3항은 IPTV사업 법인의 대표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는 내용임.
- 앞서 「방송법」 개정에 대한 검토 취지와 유사하게,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서비스 품질 유지 등 공익 관점에서 최소한의 결격사유는 유지할 필요가 있고, 방송사업 허가에서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은 중단 없는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요 심사항목에 해당하며, 방송사업자 및 대표자 등 경제적 결격사유로 인한 방송서비스 중단 발생 시 심각한 공공 이익의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사업은 다수 국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로서, 방송사업자는 책임감과 신뢰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에게 방송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경우, 다수 국민에게 제공하는 방송서비스에서 유사한 재정적 리스크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검토(안 제5조)

- 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 6. (생략) ②·③ (생략)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제5조제2항),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제6조제1항).
- 그리고 제9조제1항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비롯한 경제활동 및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통신망을 운영하는 기간통신사업에게 높은 공공성 및 신뢰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인터넷, 전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공익적 성격과 중요도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 사업자가 책임감과 신뢰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고의 부도 후에 법인을 재설립하는 등 사업자의 부도덕한 영업 행위 방지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만큼, 불법행위 방지 및 통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현행 규정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대한 검토(안 제6조)

- 제정안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을 위한 임원등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1조의3(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제31조의3(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

현행	개정안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 ----- ---.
1. 임원 및 전자문서보관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자	1. ----- -----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삭제>
다. ~ 바. (생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 현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공인전자문서센터”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업무 등을 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를 의미함.

○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보관등에 필요한 인력·기술능력·재정능력 등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⁵⁾

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보관등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법 제31조의3 제1호 나목은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임원등이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센터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의 취지가 전자문서보관등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있어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정의) 제9호에 따라 전자문서의 안전한 보관/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31조의6 및 제31조의7에 따라 보관된 전자문서의 무결성이 추정되고, 전자화문서 보관 시 전자화대상문서 폐기가 가능해지는 등, 전자문서의 안전한 보관뿐만 아니라 문서로서의 효력도 보장하는 공익적 성격이 높은 사업자이고,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를 유출하여 판매하거나, 혹은 보관문서의 내용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사업자의 책임감과 신뢰성을 갖추는 차원에서 현행 규정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등으로 한정한다.

③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보관등에 필요한 인력·기술능력·재정능력과 제31조의9제6항에 따른 인적·물적 측면에서 독립성 및 그 밖의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 「전자서명법」에 대한 검토(안 제7조)

- 제정안은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과 관련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①·② (생략) ③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1. (생략) 2. <u>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3. ~ 5. (생략)	제8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 5. (현행과 같음)

- 현행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전자서명인증업무”란 전자서명인증,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록의 관리 등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하는데 (제2조제7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가입자 및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기관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음(제7조, 제8조 및 제9조).

- 그런데 법 제9조제3항제2호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제도(이하 ‘인정’이라 함)는 공인인증제도 폐지 이후(’20.12.10.), 마련된 제도로서 높은 신뢰성·안정성이 요구되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결격사유 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및 신원을 증명하는 등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극도의 신뢰를 요구하는 영역이므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에게 전자서명인증사업을 가능하게 할 경우, 다수 국민의 신원 및 이를 통한 각종 금융서비스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대한 검토(안 제8조)

- 제정안은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 7. (생략)	제16조(등록의 결격사유) -----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3. ~ 7. (현행과 같음)

-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하고(제2조제2호),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4조제1항).
- 현행 제16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공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7호에 따라 임원 중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

법인도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바, 법인의 대표뿐 아니라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에도 해당함⁶⁾.

○ 이러한 규정은 국가 인프라의 일부인 정보통신설비 공사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될 필요가 있는 만큼 엄격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 파산선고받은 정보통신기술자 개인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결격사유로 파산자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현행법상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 대해 일정 수준의 재정능력을 필요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공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삭제

5.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사업자(공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나. 제66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또는 제2장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자.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검토(안 제9조)

- 제정안은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법인의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법인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0조의4(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제>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요건으로 이용자보호계획, 사업계획, 기술·재정능력 등을 규정하면서 법인의 대표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 불법감청설비를 탐지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통신의 내용을 알게 될 수도 있는 만큼, 불법감청설비탐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높은 공공성 및 신뢰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 대

표자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은 탐지활동 중에 알게 된 국가·기업의 기밀 및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등, 고도의 준범의식과 사회적 공신력이 요구되는 업종인 만큼 불법감청설비탐지업에 대한 현행 결격사유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문 의 처
02)6788-5236